

# Korean News Digest

Issue #12

(SS 2025)

# 인사말



안녕하세요.

AI Tamimi & Company Korea Group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한 해 건강하시고, 사업과 가정에 소원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의한 해이길 기원합니다.

중동의 불안정했던 여러 지정학적 변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리 건설사들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은 선전했습니다. 2024년 중동 지역 내 해외 건설 수주액은 184억 9,000만 달러로 우리 건설사 해외 수주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고, 국가별 수주 현황도 사우디아라비아(119억 달러, 32.1%), 카타르(47.5억 달러, 12.8%)로 중동 국가들이 수주국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난 몇 년간 법제를 현대화하고,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며, 다양한 프리존을 마련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글로벌 조세개혁 합의에 발맞추어 각국의 조세제도를 들여다보고 법인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들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의 새로운 법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중동에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AI Tamimi & Company (이하 "알타미미")는 2024년에 발행한 Eyes on 2024에 이어, 올해에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용을 Eyes on 2025를 통해 발간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과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 대외 수출 환경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우리 기업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2025년입니다. 그럼에도 중동에서 발주될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을 이루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아랍에미리트 (이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하 "사우디")를 중심으로 정부 간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만나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합의한바, 2025년도 중동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알타미미의 한국팀은 6년째 생일을 맞는 반기 간행물인 Korea News Digest는 물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분야별 법률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우리 기업에 현지 진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최전선의 사업파트너이자 법률자문사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타미미 한국팀 배상



**오마르 변호사**  
**Omar Omar**

Partner, Head of Transport & Insurance,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Counsel  
Korea Group Lead  
j.ha@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Korea Group  
h.song@tamimi.com



# Table of Content

- 04** Legal Shifts and Compliance Challenges
- 09** Power Plays in Market Competition and Corporate Strategy
- 12** Redefining Global Business: Tax, Trade, and Digital Innovation
- 17** Powering Tomorrow, Green Energy & Project Dynamics
- 23** Judicial Rulings and Corporate Resilience
- 28** Al Tamimi & Company News

The background features a grayscale abstract image of flowing liquid, possibly water or oil, creating dynamic, curved patterns. A solid blue rectangular overlay covers the upper portion of the page, serving as a backdrop for the title text.

# Legal Shifts & Compliance Challenges

# Key Amendments to Saudi Arabia's Labour Law

사우디 아라비아는 Vision 2023의 일환으로 노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노동법은 올해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노동법 시행령의 개정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한다고 개정될 것입니다 (개정노동법 37조). 현재 노동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허가(work permit)의 기간종료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훈련

고용인은 사우디근로자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법 시행령이 더 자세한 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습기간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고용계약체결시 최대 180일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법에 따른 수습기간은 90일이며, 수습기간 종료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교통수단의 제공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위해 주거 및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더라도 고용인은 노동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차별금지

개정근로법은 인종, 나이, 장애, 결혼 여부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의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징계에 대한 이의

피고용인은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이의를 기각하거나 15일내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내에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의 해지

파산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 통지기간

사우디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사전통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인의 사전통지기간은 60일로 변함이 없습니다.

## 사직

개정근로법은 사직을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정근로법 79조는 사직과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초과수당

개정근로법 107조는 승인된 초과근로에 대하여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정근로법 113조는 남성근로자가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중에 3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는 151조에 의하여 1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주).

## 벌금

개정근로법은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근로자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우디 정부로부터 근로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200,000-500,000 사우디리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Saudi PDPL Updates: New Guidelines, Rules & Regulations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당국(이하 "SDAIA")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PDPL")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PDPL Guideline) :**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적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인 경우, 공공의 안전의 목표로 하는 경우, 익명화된 정보의 경우 등 6가지 허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위협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법적 의무에 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고 개인정보의 국외로의 정보 이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 **최소 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MPDD Guideline):**

기업은 수집 정보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폐기하는 등 PDPL을 준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임직원들이 PDPL의 원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설립 가이드라인 (EDPP Guideline):**

기업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설립하도록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의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해당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설명하여 PDPL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임명 규칙 (DPO Rules):**

DPO 임명 규칙은 DPO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DPO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자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데이터 침해 대응 계획 검토, 준수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사우디 역외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규정 (Transfer Regulation):**

역외 전송 규정은 사우디에서 외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신 당사자가 사우디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전송이 허용된다는 점과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SCCs) 또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입니다.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BCR Guideline):**

BCR 규칙은 다국적 기업 그룹 내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적용을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부 규정을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SCCs):**

SCCs는 사우디에서 외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PDPL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으로, GDPR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 체계를 제공합니다. SDAIA가 제공하는 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필수 항목 외 임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Regulatory Investigations: Part 1, the UAE Landscape

본 고는 규제 조사의 맥락에서 UAE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들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이하 "CBUAE")

CBUAE는 2018년 연방법 제14호에 따라 UAE 내 은행, 금융 중개기관 및 결제 시스템을 감독하며, 금융법 위반 및 불규칙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사시 발견된 금융 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가 임명되어 운영을 감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중한 위법부당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최대 AED100,000,000(1억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교적 경한 위법부당행위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AED 10,000 to AED 10,000,000(1만 디르함에서 1천만 디르함)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BUAE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고충 및 항소위원회(Grievance and Appeal Committe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CBUAE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UAE 법원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CBUAE는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재제하며, 실제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일부 환전소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 UAE 증권 및 상품 당국 (이하 "SCA")

SCA는 2000년 연방법 제4호와 2021년 의장 결정 제13호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수위에 따라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위반의 경우 경고나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밀 누설이나 사기와 같은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00만 디르함(약4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C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SCA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집행부서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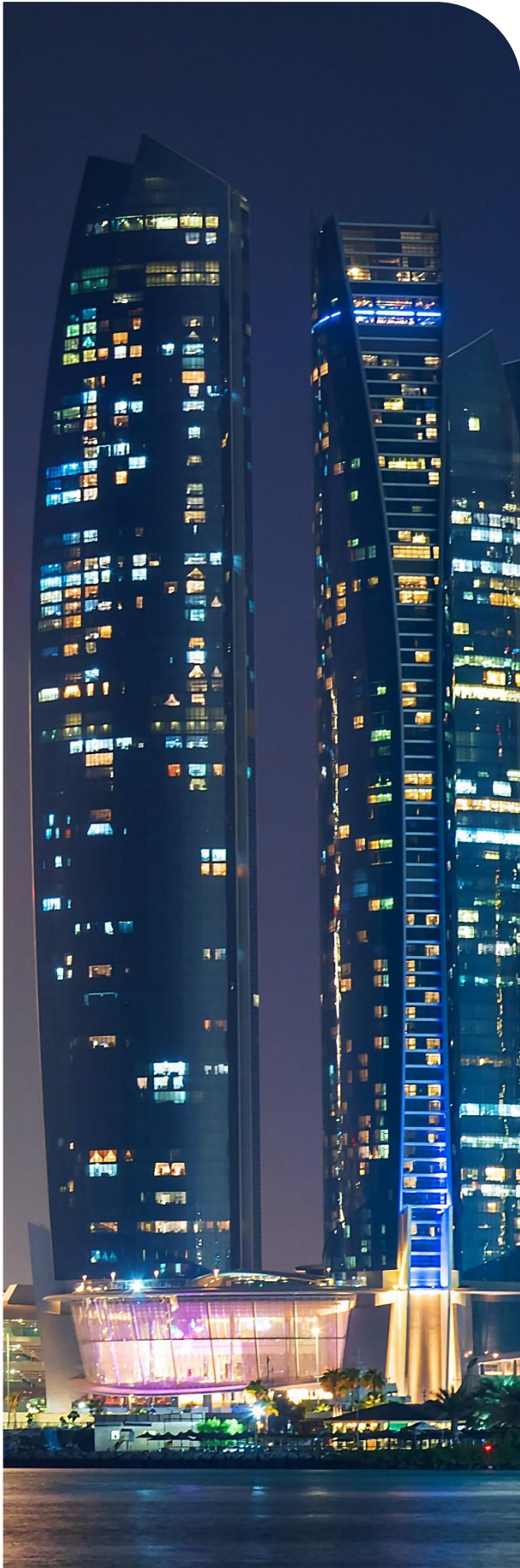
## 가상 자산 규제 당국 (이하 "VARA")

VARA는 2022년 제4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두바이 내 가상 자산을 관리감독합니다. VARA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이하 "VASP")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VASP가 가상 자산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운영 허가가 정지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취소되면 VARA는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사업자의 영업 허가도 취소하게 됩니다.

VARA는 필요시 인허가를 받은 가상 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VASP를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VAR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VARA 고충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지 15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확정적이며, VARA 웹사이트에 공지될 수 있습니다.





#### DIFC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 (이하 "DFSA")

DFSA는 DIFC 규제법(2004년 제1호)에 따라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를 감독하는 규제 당국입니다. 법규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 요청,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조사인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과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발견되면 벌금 부과, 견책, 시정 명령, 피해 보상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DFSA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DFS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재판소(Financial Markets Tribunal)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소를 신청하면 하급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ADGM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 (이하 "FSRA")

FSRA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이하 "ADGM")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 규정 2015에 따라 ADGM) 감독하는 금융 규제기관입니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면 조사관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나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도 합당한 수준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경고,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FSRA는 결정 사유와 발효일, 이의제기 권리 등을 담은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 패널(Appeals Panel)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항소 절차가 끝나면 최종 결정문이 나옵니다. 항소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오류나 권한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The background features a grayscale image of flowing liquid, possibly water or oil, creating dynamic, curved patterns. A solid blue rectangular overlay covers the upper portion of the page, serving as a backdrop for the title text.

# Power Plays in Market Competition and Corporate Strategy

# Salient changes to the UAE Merger Control Regime



2023년 12월에 시행된 UAE 의 신규 경쟁법 (New Competition Law)은 2012년 법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기업결합 신고와 관한 주요 변경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매출액 기준(Turnover Threshold) 도입**

기존의 시장점유율 기준에 더해 매출액 기준도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시장에서 당사자들의 총 연간 매출이 UAE 각료회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기한 연장**

신고 가능한 거래의 신고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심사 기간 중단 조항**

추가 정보 요청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심사 기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거부 도입**

법정 기간 내에 결정이 없을 경우, 이전 법에서는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했으나, 신규법에서는 거부로 간주합니다.

- **면제 규정 변경**

특정 부문에 대한 일괄적인 면제를 폐지하고, 해당 부문이 자체적인 경쟁법 규정을 가진 경우에만 면제를 부여합니다. 정부 소유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조항도 변경되었습니다.

- **수수료 도입 및 벌금 강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도입되고,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의 2-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0만-500만 AE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향후 발표될 각료회의의 결정과 시행 규정을 통해 매출액 기준, 정부 기관 면제, 신고 수수료, 이의제기 메커니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Merger Control Developments in Saudi Arabia since 2023



2023년 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 합병 관리법과 관행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기업결합신고 기준치 상향조정

사우디의 경쟁당국인 General Authority for Competition (GAC)는 2023년에 경제적 집중에 대한 신고 기준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GAC는 경제적 집중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집중 당사자들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 기준을 1억 사우디 리알(SAR)에서 2억 사우디 리알(SAR)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3년 11월 아래와 같은 새로운 세부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연관성 필요;
- GAC의 합병 관리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한 지배권 변경발생;
- 다음 매출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당사자들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그룹 기준)이 2억 사우디 리알 초과;
  - 2) 인수 대상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이 4,000만 사우디 리알 초과;
  - 3) 당사자들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연간 총 매출(그룹 기준)이 4,000만 사우디 리알 초과

## 기타변화

- 신고수수료 인하: 최대 40만 사우디 리알에서 25만 사우디 리알로 인하
- 자동차 유통권 신고 의무화: 유통업체가 이미 다른 대리점을 보유한 경우
- 조건부 승인 사례 증가: 2023년에만 3건의 조건부 승인
- 법 집행 강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기소 사례 발생

## 현황

- 2023-2024년 GAC의 거래 차단 사례 없음
- 경제적집중을 사유로 거래가 차단된 유일한 사례: 2022년 National Gas와 Best Gas Carrier 건
- 새 기준치에도 여전히 사우디 내 매출이 낮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는 문제 존재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The background features a grayscale abstract image of flowing liquid, possibly water or oil, creating dynamic, curved patterns. A solid blue rectangular box is positioned in the upper-middle section, serving as a backdrop for the title text.

# Redefining Global Business: Tax, Trade & Digital Innovation

# South Korea - KSA Double Tax Treaty and Its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12월 1일이 중 과 세 방 지 협 정 (이하 “조 세 협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세협약과 사우디 국내세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고정사업장 등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조세협약과 사우디 국내세법상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고정사업장

### a. 사우디 세법상의 고정사업장

사우디 세법에 따르면 사우디 내에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세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원격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가 물리적으로 사우디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우디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b.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사우디 세법과는 달리 조세조약은 물리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5.3조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사우디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총괄주의과세 (force of attraction) vs 귀속주의과세 (attribution)

### a. 사우디 세법상의 총괄주의과세

사우디 세법 5조는 사우디 고정사업장을 통해 판매 혹은 수행된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도 사우디 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소득이 사우디 고정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사우디 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b. 조세조약상의 귀속주의과세

조세조약은 사우디 세법과는 달리 귀속주의과세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7.1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사우디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우디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우디 고정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소득만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 3.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 a. 사우디 세법상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사우디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8.1조 참조). 다만, 상장주식의 매매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b. 조세조약상 자본이득세

조세조약에 따르면 납세자가 단독으로 혹은 이해관계인과 함께 사우디 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회사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사우디에서 과세됩니다. 즉, 납세자의 지분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이득이 사우디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4. 원천징수세

조세조약은 로얄티에 대하여 사우디 세법에 비하여 유리한 원천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혹은 10%).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은 사우디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조세조약에 대한 적용 및 판단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우디국세청의 납세처분이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신청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Navigating the Future: ADGM's DLT Foundation Framework & the Rise of South Korean IT & Gaming Giants

## 1. ADGM의 DLT 재단 프레임워크 개요

ADGM(Abu Dhabi Global Market)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야에서 선도적인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규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및 게임 기업들은 ADGM의 DLT 재단 프레임워크(DLT Foundation Framework)를 활용하여 중동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DGM의 DLT 재단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규제 접근 방식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법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탈중앙화(DLT 프로젝트의 핵심 원칙)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법인격을 부여받는 탈중앙화 법인의 설립 허용, 유연한 유틸리티 토큰 발행 방식, 간소화된 등록 절차 등이 포함되며, 이는 기존 법적·규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DLT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실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탈중앙화 토큰 프로젝트의 법적·운영상 과제

탈중앙화 토큰 프로젝트는 탈중앙화와 프로젝트 개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운영상 문제에 직면합니다. 탈중앙화의 주요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정한 소유권 및 가치 분배
- 기존 지배구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검열 위험 감소
- 네트워크 다양성 확대

이러한 요소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거버넌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ADGM의 DLT 재단 프레임워크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 또는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법적 구조를 고려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3. DLT 재단의 거버넌스 및 통제 구조

DLT 재단의 거버넌스 및 통제 구조는 재단의 정관을 준수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DLT 재단이 탈중앙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법적 명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 a. 재단 이사회 (Foundation Council):

토큰 보유자와 설립자는 프로토콜 운영에 대한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 신중한 관리(due care),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재단의 운영이 정관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b. 토큰 보유자 투표 (Token Holder Voting):

DLT 재단이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토큰 보유자는 재단 운영 및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커뮤니티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 **가디언 (Guardian):**

가디언의 임명 여부는 설립자의 생전에 선택 사항이지만, 설립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디언의 역할은 재단 이사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헌법 문서(constitutional documents)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DLT 재단의 헌장 (Charter)에는 설립자가 재단 이사회에서 단계적으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특정 기간 내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이 달성된 후 독립적인 가디언을 임명하여 재단의 완전한 탈중앙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 **수익 분배 (Revenue Distribution):**

DLT 재단이 토큰 보유자에게 자산이나 소득을 분배할 경우, 이는 일부 관할권에서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될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DGM은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설립자가 재단 헌장에 소득 및 자산 분배의 가능 여부와 관련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4. ADGM을 통한 중동 시장 진출과 한국 기업의 기회

ADGM은 DLT 분야에서 혁신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기업들의 전략적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IT 및 게임 기업들은 ADGM의 DLT 재단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동 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ADGM의 법적·규제적 환경은 탈중앙화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여,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등록 절차의 간소화 및 유틸리티 토큰 발행의 유연성은 DLT 기반 프로젝트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의 ICT 산업 규모는 2025년까지 약 950억 달러(약 1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다각화 및 첨단 기술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및 네오플라이와 같은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동 시장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및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술 기업들은 ADGM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동 시장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규제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ADGM의 법률 고문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Powering Tomorrow, Green Energy & Infrastructure Development

# Solar projects and offtake considerations in Saudi Arabia

Vision 2030 과 관련하여 Green energy initiatives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민간 기업("Owners")이 태양광 발전소("PV Plants")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은 먼저 기존 시설의 전력 공급에 사용되며(이와 관련하여 자가 Regulatory Framework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or Self-Consumption 적용됨), 잉여전력은 전력망에 판매됩니다.

본 고에서는 소유자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이는 건설, 전력 구매 계약(off take) 및 규제 관점에서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요

PV 발전소는 전력 및 열병합 규제 당국("ECRA")의 관할권에 속하며, 소유자는 전력망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ECR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PV 발전소는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Official Gazette on 04/11/1438 A.H. Royal Decree No 182) ("규정")이 종종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출력이 1kW에서 2MW 사이인 PV 발전소에 적용됩니다.

설치 및 운영 중인 PV 발전소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ECRA와 SASO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전력 구매 측면에서, 사우디 전력 회사(SEC)는 PV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주요 구매자로, 전력 구매 계약(PPA) 및 Grid and Distribution Code를 준수하는 인터커넥션 계약을 SEC와 체결해야 합니다.

PPA 조건은 상업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i) 규정에 따르면 PPA는 계약 기간, 요금 및 가격, 결제, 계약 종료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뤄야 하며, 요금은 Electricity Law (Official Gazette on 14/05/1442 A.H. Royal Decree No 262)에서 추가로 규정됩니다. (ii) 사우디 전기 규제 당국(SERA)은 요금 승인을 담당하며, 운영 효율성, 완전 비용 회수, 국가 정책 준수,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명확한 소비자 비용 지표, 유사한 소비자 그룹 간 비차별 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승인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전력 구매자(즉, SEC)가 우월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만(앞서 언급된 필수 요건 외에도), 소유자는 PPA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포함하도록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PV 발전소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
- 전력 구매자의 전력 구매 의무 범위.
- 전력 구매자의 'take or pay' 의무(가능하면 지급 보증으로 뒷받침).
- 상호 연결 관련 의무, 그리고 전력 구매자의 의무 범위 명확화(특히 인도 지점 이후를 포함).
- 생산된 전력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이 전력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 검침 요건 및 감사 권리.
- 청구서 발행 및 연체금 처리 절차.
- 고장 및 중단과 관련된 절차.
- 허용되는 정전 및 규제 사유(법률 변경과 관련된 경우 포함).
-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 종료 절차.

##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규제 및 PPA와 관련된 문제 외에도, PV 발전소의 건설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EPC 계약자를 고용하여 턴키 방식으로 PV 발전소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자신의 이익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작성된 EPC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인해, 시장에서는 간소화된 형태의 EPC 계약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간소화가 소유자의 보호나 계약 명확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태양광 프로젝트는(다른 건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식별하고, 위험이 명확히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EPC 계약은:

PPA의 조건이 EPC 계약에 백투백(back-to-back) 방식으로 반영되도록 보장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양광 PV 시스템의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여하는 EPC 계약자 및 기타 컨설턴트가 관련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Ministry of Energy 및 ECRA 포함).
- 관련된 상호 연결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 PV 발전소의 출력 요구사항('보장된 순출력' 및 효율성 요구사항 포함)과 이러한 출력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성능 지체 배상금 제도를 포함하여, 고용주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을 명시합니다.
- PV 발전소의 완공 시점(고용주의 요구사항에 따라)을 명확히 하고, 완공 시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지체 배상금 제도를 포함합니다.

- EPC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제 사유를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구제 사유는 PPA에 명시된 구제 사유보다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 SASO, ECRA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EPC 계약자의 설계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 자재 조달 책임(PV 패널 포함)을 다루며, SASO가 해당 제품을 승인하고 적합성 인증서를(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한 경우에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기존 구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PV 패널이 지붕과 같은 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경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구조물의 구조적 무결성을 확인하는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소유자가 EPC 계약자의 단일 책임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EPC 계약자는 구조물의 소유자로서 설계/하중 관련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소유자가 이 위험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보험을 다룹니다. 이 사항은 사례별로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옵션은 설치 작업을 시설의 기존 소유자 보험의 확장으로 포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명확한 변경/변형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 시설의 일반 상업 운영과의 조정 및 인터페이스 문제를 다룹니다.
- 결제, 지적 재산권, 중단, 계약 해지, 결함 수정, 성과 보증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합니다.



EPC 계약 관련 작업이 완료되면 소유자는 PV 발전소의 유지보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PV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유지보수가 제한적으로 필요하지만, 최적의 운영 성능을 보장하고 정전/고장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 서비스 계약(잠재적으로 EPC 계약자나 PV 패널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점은 소유자가 PPA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법률 분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의 일환으로, 규제 체계와 계약 관행 또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Qatar Tender Law; the general rules governing Government Projects

카타르는 최근 공공 입찰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에 시행된 카타르 입찰법(Law No. 24 of 2015 issuing the Tenders and Bids Regulatory, 이하 "카타르 입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Shura Council은 카타르 입찰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카타르 검찰(Qatari Public Prosecution)은 카타르 입찰법 및 카타르 형법(Qatar Penal Code)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 개인(공무원을 포함)을 기소했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카타르 검찰은 공공 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 8명의 피고인이 뇌물수수죄, 공공 자금의 고의적 손상, 직권남용죄,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 및 검찰의 발표를 통해 공공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 해당 정부기관 등 포함하여 모두가 카타르 입찰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공개 입찰 및 예외적인 입찰 방법

카타르 입찰법 및 시행령(Executive Regulations No. 16 of 2019)에 따라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6가지 입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카타르 입찰법은 특정 공공 기관이 입찰법 자체 또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권고에 따라 총리가 내린 결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 입찰법에서 면제되는 기관에는 카타르 군(Armed Forces)과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구 카타르 석유)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 기관 또는 입찰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기관은 입찰 위원회(Tender Committee)를 두어야 합니다. 입찰위원회는 공공 입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입찰 방법을 승인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위원회는 필요한 권고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각 입찰 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에 선정된 계약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1. 공개 입찰

공개 입찰은 공공 기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기본 방식입니다. 카타르 입찰법 및 시행령은 공공 기관과 공공 자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세 절차를 규정하고 모든 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2. 2단계 입찰(Two-Phase Bidding)

공공 기관이 입찰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상세 기술 사양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2단계에 걸쳐 입찰이 진행됩니다. 1단계(Phase 1)에서는 공공 기관이 가격 설정 없이 초기 입찰 제안서 제출을 공고하며, 제안서 제출시 기술 제안 및 입찰자의 자격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단계(Phase 2)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입찰자에게 확정된 기술 사양을 발표합니다.

## 3. 제한 입찰

복잡하거나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특정 공급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입찰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사전 자격 심사 단계와 입찰 단계, 2단계로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 4. 실무 계약

긴급 상황이나 또는 공개입찰 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공개입찰을 공고했으나 채택 가능한 입찰서가 없는 경우, 추가 공개입찰을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부 조건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최소 3개의 입찰자와 협상 후 그 중 하나가 선정됩니다.

#### 5. 경쟁 입찰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구, 설계, 개요, 도면 작성 또는 기타 기술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6. 직접 계약

실무계약과 마찬가지로 긴급 상황이나 또는 공개입찰 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특정 공급자만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지며, 장관 승인도 필요합니다.

카타르 입찰법 위반시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카타르 형법 (Penal Code)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공금의 고의적 손실(가격 인상, 불필요한 물품 제공, 타 거래자의 경쟁 방해), 직권남용죄 및 자금세탁 모두 입찰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42조에 의거 뇌물수수죄는 두 당사자 간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한 후(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후) 그 행위로 이익을 본 자로부터 보상으로 금전이나 혜택을 수락하는 것도 뇌물수수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5,000 카타르 리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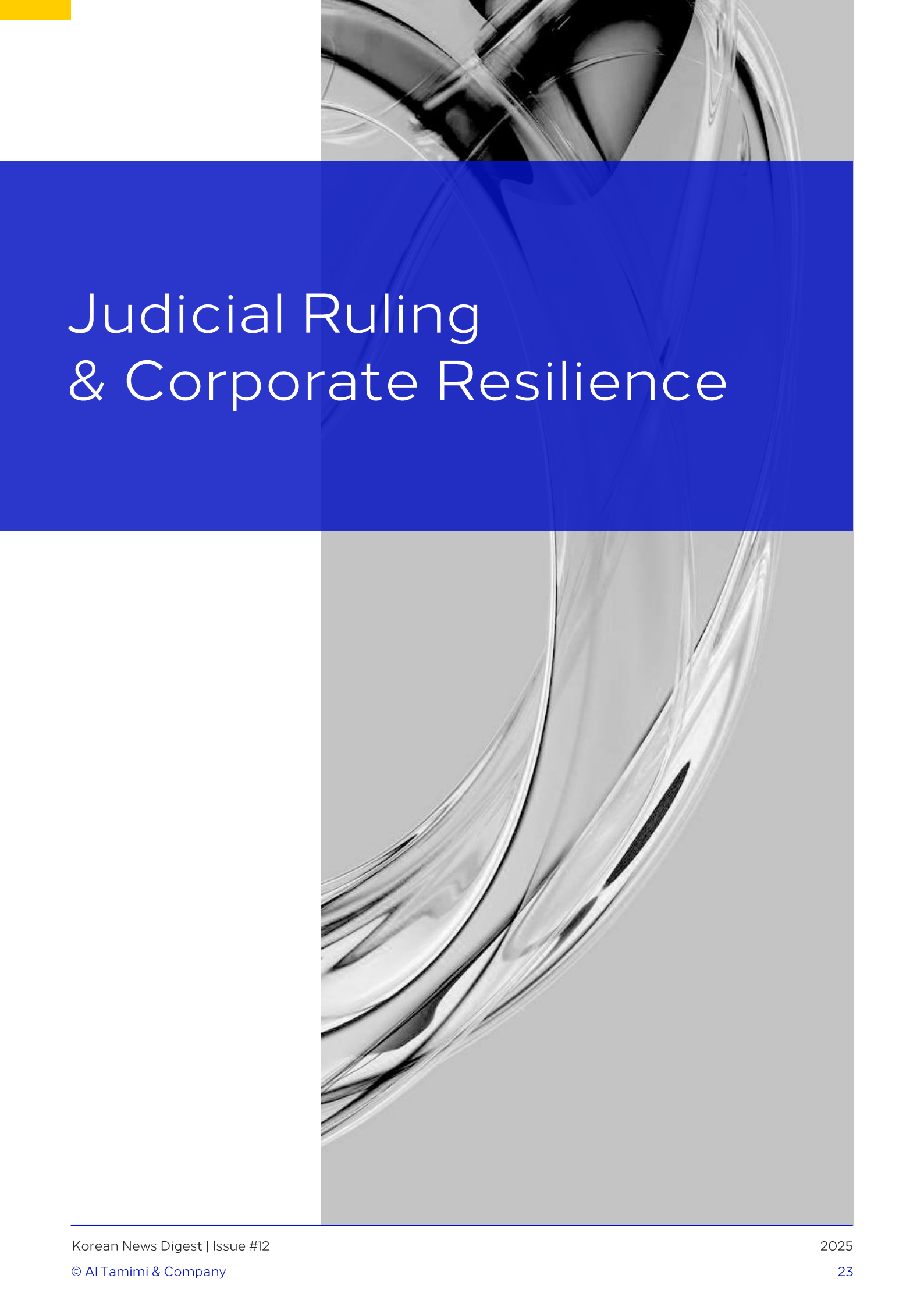
#### 결론

공개 입찰은 가장 일반적이고 투명한 방법이며, 입찰 참여 기업은 입찰시 고려해야 할 주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Judicial Ruling & Corporate Resilience

# UAE Bankruptcy Law – Executive Regulations: Key Developments and Procedures

2023년 5월 1일, 금융 구조조정 및 파산법("파산법")을 규정하는 2023년 연방법 제51호가 발효된 데 이어, 2024년 내각 결의안 제94호("행정 규정")가 발표되면서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행정 규정은 2024년 9월 16일 UAE 관보 제783호에 게재되었으며, 파산법 발효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규제 당국의 역할 및 적용 범위

행정 규정은 파산법에 따라 연방 또는 지방 규제 기관을 규제 당국으로 정의하며, 이들이 규제 대상 법인의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규정 제2조에서는 규제 당국을 UAE 중앙은행 및 증권상품청(SCA,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규제 대상 법인에 대한 파산법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UAE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여부는 향후 법률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는 기존 특정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므로 파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UAE 중앙은행의 역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산 등록부의 설립 및 운영

파산법에 따라, 법무부 내 금융 구조조정 및 파산 부서("부서")는 파산 등록부의 설립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집행 규정 제3조는 해당 등록부의 형식, 내용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관련 사법 사건의 정보
- 관리인 및 감독관(임명된 경우)의 세부 사항
- 채무자 정보(개인 및 법인)
- 파산법원의 판결 및 명령

집행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파산 등록부는 법무부장관 또는 장관 대리인의 승인하에 열람 가능하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공식 신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파산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 파산 절차 개시 요건 및 부채 한도

행정 규정은 파산 및 금융 구조조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채무 한도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채무자 신청 요건:

- 개인: AED 300,000 이상
- 법인: AED 500,000 이상
- 규제 당국 감독 대상 채무자: AED 5,000,000 이상

## 채권자 신청 요건:

-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채무자: AED 1,000,000 이상
-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채무자: AED 10,000,000 이상
- 또한, 담보 채권자의 경우, 담보의 가치가 미결제 채무보다 낮을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채무자: 개별 채권자 AED 1,000,000 이상, 채권자 그룹 AED 5,000,000 이상
- 규제 당국 감독 대상 채무자: 부족액이 AED 10,000,000 이상

규제 당국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 부채가 AED 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한도 조정은 경미한 채무로 인한 불필요한 파산 절차를 방지하고, 법원의 자원을 보다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파산 절차 개시를 위한 보증금 요건

채무자와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개시하려면 채무자의 총 부채 또는 자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은행 보증금 형태로 파산법원 국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 관리국장은 특정 상황에서 이 예치금을 감액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단, 행정 규정은 보증금의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아, 대규모 파산 사건에서 과도한 보증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방적 합의 절차 및 투표 회의

집행 규정 제9조는 파산법 제69조 및 제73조를 보완하여, 채무자가 관리인 감독 없이 진행하는 예방적 합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절차는 채무자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이므로,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의결 회의 운영 방식과 투표 요건이 명확히 정리됨으로써, 파산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리인의 사전 승인 요건

행정 규정은 재무 구조조정 절차 중 특정 채무자 활동이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1) 담보 제공 및 갱신
- 2) 채무 조기 상환
- 3) 자회사 설립 또는 주식 투자
- 4) 정상적 운영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 이전
- 5) 법적 청구권 포기 또는 금융 화해

이러한 제한은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채무자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결론

이번 개정은 파산 절차 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당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며, 파산 등록부 도입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표 회의 및 관리인 승인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Recent Dubai Court Judgments- Force majeure claims post-pandemic and during war outbreaks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제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불가항력 주장과 관련하여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 및 부동산 분쟁의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최근 판결(2023년 두바이 파산법원 판결 174, 2024년 두바이 파산법원 판결 1, 2024년 두바이 파산법원 판결 480)을 검토합니다.

## 불가항력의 정의 및 요건

불가항력은 "우월한 힘"을 의미하는 프랑스 법에서 유래된 용어로,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다루기 위해 민법 관할권에서 사용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전쟁, 팬데믹과 같은 비상적이고 불가피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불가항력 조항에 적용되는 조건들

불가항력은 몇 가지 주요 조건으로 특징지어집니다:

- 외부성: 사건은 의무자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자의 행위나 태만에서 비롯되지 않은 외부 원인이어야 합니다.
- 예측 불가능성: 해당 사건은 계약 체결 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야 합니다.
- 불가피성: 사건의 영향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사건과 의무 불이행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완화 노력: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이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들은 불가항력이 경솔하게 주장되지 않고,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도록 보장합니다.

## 팬데믹 이후 및 전시 상황에서의 주요 판례 분석: Dubai Court of Cassation Judgment 174 of 2023

2023년 Dubai Court of Cassation 판결 174호에서 법원은 COVID-19 팬데믹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한 부동산 분쟁을 다뤘습니다. 항소인은 팬데믹이 불가항력 사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완공 지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주장을 기각하며, 불가항력이 적용하려면 해당 사건이 비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불가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인이 팬데믹이 계약 의무 이행 지연을 직접적으로 초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항소인이 팬데믹이 자신의 재정적 능력이나 프로젝트 완공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전 판결을 유지하며, 불가항력 방어를 기각하고 항소인이 응답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불가항력 원칙이 적용되려면 의무 이행 지연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연이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채무자는 불가항력 방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Dubai Court of Cassation Judgment 1 of 2024

2024년 Dubai Court of Cassation 판결 1호에서 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선적 지연과 관련된 상업적 분쟁을 다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쟁 발발이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불가항력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쟁이 비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지정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선적 지연의 유일한 원인이며, 전쟁이 아니었다면 선적이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단은 이후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며,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불가항력 주장이 입증하기 어렵지만, 법원에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날 때 인정되고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Dubai Court of Cassation Judgment 480 of 2024

건설 프로젝트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연 및 미완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Dubai Court of Cassation은 2024년 480호 판결에서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고 불가항력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문가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지연이 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행위에도 기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였으며, 하급법원은 항소인이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가 청구한 계약상 벌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불가항력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머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판례 시사점

위 판결들에서 볼 수 있듯이, 두바이 법원은 불가항력 원칙을 신중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예외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불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계약 의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단순히 이행을 더 어렵거나 비싸게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불가항력은 종종 계약 의무를 면하려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 방어 근거가 부족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바이 법원은 불가항력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불가피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불가항력의 특성을 인정했지만, 외부적 요인과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만 이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Dubai Court of Cassation 판결 174호에서는 부동산 분쟁에서 COVID-19를 불가항력 사건으로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가항력 주장을 할 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계약 의무의 적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들에서는 당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지연이 계약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는지도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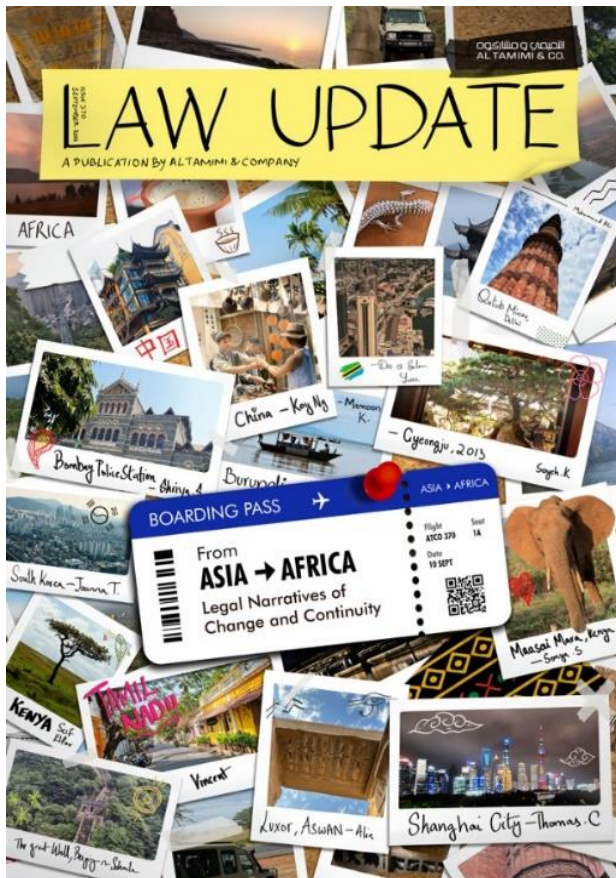


# Al Tamimi & Company News

# Tamimi News

[출판물] 알타미미의 CEO, Essam Al Tamimi 변호사 북아프리카 지역 중재 가이드(제2판) 편집에 참여

알타미미의 창립자인 Essam Al Tamimi 변호사는 Sweet & Maxwell Thomson Reuters가 최근 출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재 가이드(제2판)에 편집자로 참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알타미미 창립 이래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19개국의 중재법과 실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공하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다듬어지는 법적 체계와 사법부가 제공하는 중재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출판물] 알타미미 한국팀, Law Update 9월호 Country Group 특집호에 기여

알타미미의 Law Update 9월호는 Country Group 특집호입니다. 알타미미의 한국팀을 비롯하여 중국팀, 아프리카팀, 인도팀의 기사들로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팀은 UAE에 소재한 국내 공기업/공공기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비롯하여, 한-사우디아라비아 이종과세 방지 협정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UAE 내 증권거래소로의 교차상장, 그리고 블록체인 및 Web3 부문 기업들이 주목하는 ADGM에 대한 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팀 기사 바로가기](#)

## [주요 업무 사례] 알타미미, TA Associates의 AlephYa Education 투자에 자문 제공

알타미미는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인, TA Associates(이하 "TA")가 AlephYa Education(이하 "AlephYa")로 투자한 건에 TA를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AlephYa는 중동 지역의 현지 및 외국인 가족에게 고품질의 합리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범-GCC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TA의 이번 투자는 AlephYa의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의 일환으로, 기존 투자자인 Gulf Investment Corporation 과 Om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mpany SAOG는 기업의 주요 지분을 유지하며 TA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부터 AlephYa에 투자했던 Ashmore Investment Saudi Arabia는 이번 거래를 통해 완전한 투자 회수를 진행합니다.

## [주요 업무 사례] 알타미미, Kearney Middle East and Africa와 Dubai AI Campus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자문 제공

알타미미는 최근 Kearney Middle East and Africa(이하 "Kearney MEA")가 AI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Dubai AI Campu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과정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파트너십 체결은 Dubai AI 페스티벌에서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캠퍼스의 기업 혁신 서비스가 AI 컨설팅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지역 및 글로벌 조직에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금번 서비스는 AI 개념 증명 및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s) 개발, 조직의 임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 교육을 통해 'AI 준비' 마련, AI 운영 모델 개발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타미미는 중동 최대 비즈니스 허브의 중심에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법률자문사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주요 업무 사례] 알타미미, 두바이 파산법원에서 채무자 구제와 파산을 다룬 사건에서 고객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전례없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알타미미는 중동 전역에서 육상, 해상 및 부유식 시설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인 고객을 위해 획기적인 두바이 파산법원 판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파산 재산의 자산을 보존하고 채권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신청 채무자인 고객사가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새로운 금융 구조조정 및 파산법 아래에서 이뤄진 첫 사례로서, 두바이 파산법원이 채무자 구제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산 재산의 자산을 보존하고 채권자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개념은 UAE 파산 제도의 근간이자 본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타미미는 UAE 법원에서 이전에 시도된 적 없는, 파산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지어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동 판결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이는 전례없는 판결로, 특히 채권자의 이익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관재인이나 임시 관재인의 선임되기 이전 시점에, 상업적/재무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판결입니다. 이전 사례들은 자산 매각의 이점을 개괄한 관재인의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에 유사한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 Korea Group News

[선정] 하지원 변호사 ALB MENA Super 50 Lawyers 2024에 선정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가 발표한 "MENA Super 50 Lawyers 2024(2024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우수변호사 5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 미디어 그룹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의 ALB는 지역의 고객 및 파트너 로펌의 추천 건수와 평가를 고려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 50인의 우수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MENA 지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하변호사는 그간 MENA 지역 최전선에서 한국 고객들의 다양한 역내 크로스보더 M&A 거래와 투자 프로젝트에서 활약하며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 인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자문해 왔습니다.

[강연] 한국팀 하지원 변호사, IAKL의 연차총회에서 강연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한인법률가회 (IAKL)의 2024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각국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egal Profess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에 대해 UAE의 AI 관련 산업 동향과 법제의 개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연] 송형민 변호사, 한국 법무부의 법률세미나에서 강연

알타미미의 리야드 사무소에 주재하는 한국팀 송형민 변호사는 지난 11월 28일 한국 법무부가 개최한 법률설명회에서 최근 몇 년 그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우디 조세당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조세 분쟁과 관련하여, 사우디의 조세법과 규정, 사우디의 조세분쟁과 관련한 주요 실질적 쟁점들을 논의하여 참석한 한국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연] 알타미미 한국팀의 송형민 변호사 2024년 한-사우디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강연



알타미미의 송형민 변호사는 10월 1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2024년 한-사우디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로드쇼(Saudi-Korea Smart City, Smart Farm Roadshow 2024)에 연사로 참여하여 사우디에서의 법인 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 절차와 조인트벤처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쟁점과 현지 관행에 대해 발표하여 참가한 한국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알타미미 Omar Omar 변호사, Philip Kotsis 변호사 주간동아와 인터뷰



Al Tamimi & Company의 파트너 변호사인 Omar Omar 변호사와 Philip Kotsis 변호사는 지난 10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UAE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주요국들의 법규의 변화가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이끌고 있다며, UAE 법률 뿐 아니라 사우디 법률도 내국·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동등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는 등 중동의 법률 시스템의 동향을 소개하며 중동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 유념할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강연] 알타미미 Omar Omar 변호사, KITA와 DAFZ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강연

지난 10월 23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두바이공항프리존(DAFZ)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 UAE 대사관이 후원한 “Unlocking Opportunities: Building Bridges for South Korean Companies” 세미나에서 알타미미의 Omar Omar 변호사는 “UAE의 수출입 요건”을 주제로, 두바이공항프리존을 통한 중동 진출 방법과 혜택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120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등 중동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알타미미 Omar Omar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 사내세미나에서 강연



Al Tamimi & Company의 해상팀을 총괄하는 Omar 변호사는 한국선주상호보험 (Korea P&I Club) 임직원들께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등 중동의 주요 국가들의 해상법의 규제 변화와 해운 산업에 미칠 주요 영향을 논의하는 사내세미나를 통해 중동 해운 사업부문의 주된 변화와 관련 개정법의 최신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고문]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 산후조리서비스의 UAE 진출 가능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Jiwon Ha (하지원 변호사)는,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5월 CEPA 체결 이후, 한국과 UAE는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UAE의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관련된 라이선스들, 라이선스별 요건 등 산후조리 서비스 관련 규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GHKOL 전문위원 인사이드

##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 산후조리 서비스의 UAE 진출 가능성

하지원 GHKOL 전문위원  
변호사, Al Tamimi & Company Senior counsel

개관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올해 5월 한국과 아랍에미

## “격변하는 오일 머니, 분기 보고서 기다리면 늦는다”

사우디·UAE, 물류·AI 투자 활발  
외국자본에 현지인과 동등한 지위  
중동투자자 기업 방문에 기회 잡길

“다음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뒤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에 직접 방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오마르 오마르 파트너 변호사(왼쪽)와 필립 코트시스 파트너 변호사(사우디 책임자)는 중동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한국 투자자와 기업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오마르 오마르·필립 코트시스 변호사



법무법인 알타미미의 필립 코트시스(왼쪽부터)·오마르 오마르 파트너 변호사가 사우디와 UAE 최신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 오마르 변호사는 “UAE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우디는 2년 만에 세계 물류 허브 순위 123위에서 50위로 올랐고, 앞으로 5년 내로 상위 20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사우디와 UAE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투자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부터는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 지위가 더 공평해지는 등 사우디 투자 환경이 더 개방될 예정이다. 코트시스 변호사는 “법을 개정과 도입이 끊임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지와의 연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며 “특히 법무법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인터뷰] 알타미미 Omar Omar 변호사, Philip Kotsis 변호사 이데일리와 인터뷰

지난 10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AI Tamimi & Company의 Omar Omar 변호사와 Philip Kotsis 변호사는 사우디와 UAE에 물류 인프라 분야는 물론 첨단기술,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수합병 및 IPO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는 주요 산업부문들의 동향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는 지역 법제의 특성상 중동으로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관련 법과 규제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비즈니스 계획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벤트] 알타미미,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세미나 주최

2024년 10월 24일, AI Tamimi & Company와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사우디의 신규 회사법과 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시 당면하는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중동 지역에 오랜 관행이던 대리상 거래와 법률상의 주요 이슈와 대리상법의 최신 개정 사항들을 하이라이트하여 향후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중동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주요 분쟁들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분쟁해결 메카니즘과 최신 경향을 설명하였습니다.

# Korea Group Deals and cases

## 국내 민간은행에 인수금융 관련 자문

알타미미 하지원 변호사는 아부다비 기반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산하의 투자회사인 무바달라 캐피탈 (Mubadala Capital) 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프리미엄 육아용품 업체인 부가부 (Bugaboo) 인수를 위한 금융조달 건에 국내 주요은행사가 유수의 글로벌 은행 및 UAE 내 로컬은행과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적합한 인수금융의 구조와 조건을 협의하고, 관련 계약서, 선행조건, 담보권 및 기타 법률의견서 검토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국내 블록체인업체의 DLT Foundation 설립

알타미미 하지원 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업체가 ADGM 내에 DLT 재단을 설립하는 건에 자문하였습니다. 높은 규제 자율성과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프레임을 제공하는 ADGM 은 2023년말 DLT 재단 관련 규정과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세계최초로 유틸리티토큰발행을 위한 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안정성과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ADGM 이 출범하여 운영되어 온 지난 10년간 아부다비와 ADGM 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에 자문하며 이들의 운영을 밀착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신기사 및 Family Office 에 시리즈D 투자 자문

알타미미 하지원 변호사는 국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패밀리오피스가 아부다비글로벌마켓 (ADGM) 에 펀드와 특수목적법인(SPV) 를 설립하고 해당 vehicle 을 활용하여 글로벌 AI 반도체업체의 시리즈 D 라운드에 투자하는 거래에 성공적으로 자문하며, ADGM 내의 SPV설립부터 시리즈 D 참여를 위한 각종 투자 관련 계약서 (SPA, Voting Agreement, Investor Rights Agreement, Right of First Refusal and Co-Sale Agreement) 등 을 검토하였습니다.

## 국내 주요방산업체의 MENA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설립 업무

알타미미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MENA 지역본부 설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지역본부의 설립은 사우디 정부 혹은 주요 공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리야드 사무소의 송형민 변호사와 기업팀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RHQ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 D 클라우드 업체의 사우디 지사 설립

알타미미 송형민 변호사는 한국 대표 클라우드 업체의 리야드 지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 및 데이터 센터의 구축 등은 Communication, Space & Technology Commission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종으로서 저희 알타미미는 역내 글로벌 ICT 기업들의 진출과 관련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역내 최대규모의 TMT 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우디에도 상주하는 TMT 팀을 두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버린클라우드 (데이터 주권)을 포함하여 첨단기술을 둘러싼 환경과 규제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Tamimi Insights

## 01

해외 기업의 UAE 거래소로의 일반상장 동향 및 우리 기업의 기회 (Why Should Companies Listed in Korea Consider a Secondary Listing on the Stock Exchanges in the UAE, October 2024)

지난 몇 년 간 놀랍게 성장한 UAE 의 IPO 시장의 주요 동향을 돌아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UAE의 증권거래소가 협력하여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합니다



## 02

Tamimi Trends 시리즈 2편: GCC 지역의 최신 법률 동향 (Recent legal developments and updates for companies in the GCC, October 2024)

기업 법무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Tamimi Trends 웨비나 시리즈 제2회에서는 GCC 국가들에 도입된 법제에 대한 주요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Tamimi Trends 제1회는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Tamimi Knowledge

## Doing Business Series

알타미미의 Doing Business Guide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바레인, 이집트, 오만, UAE 편이 발간되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편도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Doing Business Guide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 Tamimi Talks

Tamimi Talks 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최대 로펌인 알타미미의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이 각 사법권의 법률 업데이트와 산업부문의 동향을 전달하는 팟캐스트 시리즈입니다.

팟캐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 Law Update

Law Update는 클라이언트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법률 부문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알타미미의 월간 출판물입니다. 월별 주제에 따라 관련 산업 동향, 법률 뉴스, 입법 및 규제 개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지난 Law Update 시리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USINESS DEVELOPMENT  
& MARKETING LEAD - KOREA GROUP**

**Inhye Park**

[i.park@tamimi.com](mailto:i.park@tamimi.com)

알타미미 한국팀의 이벤트 초대장, 법률 자료 등의  
수신을 희망하시면 연락주십시오.



Korea Group - Al Tamimi & Company



@AlTamimiCompany



Al Tamimi & Company



التميمي و شركاه  
AL TAMIMI & CO.

[www.tamimi.com](http://www.tamimi.com)

